



부진한 실정이다.

“취학아동이 줄어드는 학교들이 남는 교실을 활용해 탁아소를 운영하는 방안은 교사복지도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이 교장은 강조했다.

여교사를 위해 학교현장에 개설된 상수방을 시작으로 △남녀 고용평등법상의 탁아소 설치 의무화 규정의 강화 △직장탁아소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△공공장터 안에 지을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에 빠진 탁아조항의 추가 등이 이뤄지면 “앞으로 공단내 직장탁아소뿐 아니라 사무직 기혼여성을 위한 직장탁아소 설립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여성계는 진단했다.

〈신연숙 기자〉